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0805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26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의2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65조의2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	<삭 제>
3.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	<삭 제>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